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290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2906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24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조정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이지은, 김예리, 이용호, 채지연

변론 종결 2022. 5. 26.

판결 선고 2022. 7. 1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24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9. 3. 20. 접수 제5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7. 8. 31.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일자를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를 유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D이 피고에게 "E/F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가 이를 알게 된 2020. 7. 25.을 그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나. 판단

1) 재판상 자백 성립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7. 8. 31.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주장을 수회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다.

나) 원고는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D로부터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시점인 2009. 10. 1.을 기산일로 삼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2021. 8. 17.자 준비서면 진술), 이때 원고가 2017. 8. 31.을 기산일로 하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 기산일에 관한 주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자인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이 2020. 6.말경이라고 다투다가(2021. 3. 22.자 답변서 진술),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일(2017. 8. 31.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아 계산한 시점)이전에 피고는 채무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였는데(2021. 6. 10.자 준비서면 진술),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기산일을 2020. 6.말경으로 하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였다거나, 피고가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7. 8. 31.로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20. 7. 25.자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를 D이 E/F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한 이후로 유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기 유예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변제 방법 : 상기 내용으로 당사에서 취한 법적 소유권 및 유치권 확보시 공증으로 우선 변제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문언상으로도 이행기가 아닌 이행방법을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D은 2008. 12. 17.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09. 1. 1. 1,000만 원, 2009. 5. 8. 2,200만 원, 2009. 7. 14. 1,500만 원, 2009. 10. 1.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경호

판사이경한

판사박소영